

거창군수입증지조례중개정조례안

의안 번호	2001~41
----------	---------

제출연월일 : 2001. 11.

제 출 자 : 거 창 군 수

개정이유

- 행정환경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, 민원인의 편리를 도모하기 위해
- 무인민원증명 발급기를 설치, 운용함에 따라 관련규정을 마련코자 함.

주요골자

- 무인민원증명발급기의 사용 조항 신설(안 제4조의3)
 - 무인발급기에 의한 제증명 발급시 수수료 징수기준 마련
 - 무인발급기 설치사항(장소, 발급개시일 등)을 고시 하여야 함.

개정근거

- 민원사무처리에관한법률시행령 제11조의 2
- 행자부고시 제2000-137호

거창군수입증지조례중개정조례안

거창군수입증지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4조2 다음에 제4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

제4조의3(무인민원증명발급기의사용)

- ①군수는 무인민원증명발급기(이하 “무인발급기”라한다)에 의하여 수수료를 납부하게 할 수 있다.
- ②무인발급기로 발급하는 제증명에는 제5조에 의한 도안을 전자 이미지화한 전자수입증지로 표시 할 수 있다.
- ③군수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수료를 납부하게 할 경우에는 무인 발급기의 관리책임자를 무인 발급기 사용부서의 장으로 하며, 발급장소, 발행개시일 등 필요한 사항을 공보나 게시판에 고시하여야 한다.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 · 구 조문 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p><신 설></p>	<p>제4조의 3 (무인민원증명발급기의 사 용)①군수는 무인민원증명발급기(이하“무인발급기”라한다)에 의하여 수 수료를 납부하게 할 수 있다.</p> <p>② 무인발급기로 발급하는 제증명에는 제5조에 의한 도안을 전자이미지 화한 전자수입증지로 표시할 수 있 다.</p> <p>③군수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 수료를 납부하게 할 경우에는 무인 발급기의 관리책임자를 무인발급기 사용부서의 장으로 하며, 발급장소, 발행개시일 등 필요한 사항을 공보 나 게시판에 고시하여야한다.</p>